

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 』 특약
2. 변경 시행일 : 2017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가입대상 추가 (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연금급여비 수급자 추가)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1조 적용범위 (생략)</p> <p>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. 『기초연금법』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3. 『장애인연금법』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. 『장애인복지법』에서 정하는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.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6. 『국민건강보험법』에서 정하는 <u>요양비 등의 수급자</u> 7. 『긴급복지지원법』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<p>제3조 ~ 제6조 (생략)</p>	<p>제1조 적용범위 (좌등)</p> <p>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. 『기초연금법』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3. 『장애인연금법』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. 『장애인복지법』에서 정하는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.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6. 『국민건강보험법』에서 정하는 <u>요양비 등의 수급자, 『노인장기요양보험법』에서 정하는 특별연금급여비 수급자,</u> 7. 『긴급복지지원법』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<p>제3조 ~ 제6조 (좌등)</p>	<p>가입대상 추가</p>